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중

1. 의결주문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남북산림협력단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는 대신 남북산림협력단에서 수행하던 남북산림협력 업무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2023년 7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산림청에 두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산림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0. ~ 7.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사항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4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
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②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
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2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산림청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35조제4항 관련)

수목원조성사업단(존속기한: 2023년 1월 27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이하	4

[별표 5]

산림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6조 관련)

1. 제36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4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2. 제36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7월 2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4급 또는 5급 이하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생략) ② 국제산림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 6. (생략)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u>사항(제36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u> <u>제36조(남북산림협력단 및 정원)</u>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7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산림청에 남북산림협력단을 둔다. ② 남북산림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u>정책의 수립·시행</u> 2.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u>합의 사항의 이행 지원</u>	제7조(국제산림협력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남북 간의 산림 및 임업 협력에 관한 <u>사항</u> <u><삭 제></u>

3. 북한의 산림 조성·보호 등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사
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

민참여 계획의 수립·시행

5. 남북 산림분야 협력 관련 국

내외 홍보전략 수립·시행

6. 북한 산림 관련 정보 분석·

연구

④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⑤ 별표 4의 직급별 정원은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남북산림협력단에 두는 공무

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한다. 이 경우 산림

청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37조(한시정원) 「산림복지 진

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산림복지단지 구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36조(한시정원) ① -----

2023년 2월 24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 <u><신 설></u>	----- ----- -. <u>② 남북산림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7월 2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림청에 둔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